
2004. 10. 18

이란의 사업진출 유용정보

1. 수입규제 및 진출사례
2. 관세 및 유통구조
3. 투자유치정책 및 진출절차

이란 사업진출 유용정보

<차례>

□ 수입규제 및 진출사례	1
(1) 선적전 검사	1
(2) 원산지 증명제출 및 영사확인	1
(3) 표준규격	2
(4) 위생, 안전허용 기준	2
(5) 샘플통관	2
(6) 진출 성공/실패사례	3
□ 관세 및 유통구조	5
(1) 수입관리제도	5
(2) 관세제도	6
(3) 통관절차	8
(4) 유통구조	9
□ 투자유치정책 및 진출절차	11
(1) 투자유치정책	11
(2) 외국인투자제한	14
(3) 투자진출절차	16
(4)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17
(5) 산업단지/개항	19
(6) 조세제도	21
참고자료	22

□ 수입규제 및 진출사례

(1) 선적전 검사

이란정부는 2001년부터 선적전 검사제도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란은행과 무역 보험공사에서 수입자의 신용 및 자체적으로 산정한 일정금액 이상을 수입시에는 수입자에게 선적전 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한국에서 수출시에는 L/C개설 이전에 수입자와 선적전 검사의 필요여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함. 선적전 검사의 경우 수입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높은 신용평가를 받고 있고 무역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치 않을 수도 있음.

선적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영표준연구소(Institute of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of Iran : ISIRI)가 지정한 이란 또는 ISIRI가 지정 및 허가한 검사기관(총 22개)중 한국내에서 Agent를 갖고 있는 검사기관은 9개로 그중 대표적인 것은 Overseas Merchandise Inspection Co.(OMIC) <서울 방배동 소재, 전화 : 3471-4725>

선적전 검사제도는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선적지연, 수수료부담 등 교역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01년도부터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란의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이란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음. 향후 우리업체의 경우 동검사가 이란 수출시 필수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신용장 개설전 수입업체에게 선적전 검사 면제를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선적전 검사기관중 하나인 IEI는 한국에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일본소재 IEI로부터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손실이 큰 바, 사전 바이어에게 검사기관 변경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2) 원산지 증명제출 및 영사확인

그간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의 하나였던 선적서류 영사 인증 의무 또한 선적전 수입검사와 마찬가지로 선택사항으로 변경됨. 수입업체가 영사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 업체가 주한이란대사관의 영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L/C 개설 이전에 가능한 수입자에게 영사인증 조항 삭제를 요구하여 영사인증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표준규격

이란국립표준공업연구소(Iranian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f Iran : ISRI)는 각 제품의 표준규격을 정하는 이란의 유일한 기관. 동 기관은 필요에 따라 품목별 표준규격을 정하는데, 결정된 규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필수 표준규격 적용대상 품목은 반드시 인보이스상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야 함. 수입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통관에 어려움을 겪게 됨.

최근 이란은 가전제품 및 자동차 부품 등에 이란표준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CE등 국제적인 표준규격을 취득한 제품은 이로 같음하고 있으나, 국제표준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의 경우는 통관이 불허되고 있음. 이 경우 다소 시간은 걸리나 수입상과 협의를 통해 이란표준규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함.

(4) 위생, 안전허용 기준

위생, 의료 및 의약품 관련 품목은 이란 보건성의 표준규격 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선적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성에 제출하여 승인을 획득해야 함. 위생, 안전허용 기준 승인을 득한 품목만 수입이 허용되는데 보건성의 심사통과를 위해서는 CE, FDA 등의 국제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후 심사결정까지 통상 45-60일이 소요됨.

(5) 샘플통관

해외에서 이란으로 발송하는 샘플 및 카탈로그 통관시 소액, 소량인 경우라도 현지에서는 통관 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음. 통관 소요기간도 1-2주 이상 장기 소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업체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시 필요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있어 현지 시장개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핸드캐리 샘플 또한 공항세관에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샘플 정식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세관원이 많아 현지인의 도움 없이는 통관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정식통관시 요구하는 예치금의 반환은

출국후 6개월 후에나 되돌려 받을 수 있어 많은 업체에서 예치금 반환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에는 여타 항공특사 대비 가격이 저렴한 EMS를 활용하는 국내기업이 많은데 현지 EMS의 서비스 약화로 샘플이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어, EMS 활용시에는 현지 바이어에게 EMS 발송 코드 송부를 통해 Follow-up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진출 성공/실패사례

(KOTRA 세계비즈니스정보-이란편 발췌)

1) 성공담

다수 이란인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노 타이에 수염을 기름. 그러다 보니 외모상으로는 재력가 여부가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함. 생활수준이 중상급에 해당하는 부류들은 의상 및 차량 등을 통해 외부로 부를 과시하려 하지만 진짜 부유층은 이슬람 혁명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부를 감추려하는 경향이 있음.

‘98년 공사주최 수출구매상담회 때의 일.

대부분의 우리나라사람들은 이란-이라크전이나 열사의 나라로 이란을 기억하고 있어 별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행색이 초라하고 영어 구사가 잘 안되는 이란 바이어와 상담을 하게 된 한국업체들은 구매력이 없는 보따리 장사썸으로 생각하고 가격제시나 상담에 건성으로 임하게 됨. 결과는 불 보듯 뻔하였고 바이어는 인솔직원에게 한국업체들이 무성의하게 대하고 이 정도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느냐는 등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한다며 불멘소리를 함. 마침 다른 건으로 상담장을 방문한 이란 출장경험이 다수인 A사의 B사장을 만나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동 바이어를 소개하게 됨.

A사 B사장은 여러 번의 이란출장과 상담을 통해 이란인의 생활관습은 물론 외관상으로 초라해 보여도 큰 거래선이 많음을 잘 알고 있어, 상담후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 및 이란 식당에 안내하는 한편, 공장방문 등 진지한 상담전개를 통해 최초 상담에서 10만불의 선수금과 잔금은 추후 L/C개설 조건으로 50만불의 계약체결에 성공하였으며 지금도 고정 거래선으로 꾸준히 제품을 선적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국이 이란이고 잘 다듬어지지 않은 수염과 검은 피부 등 행색은 잘해야 보따리장

사 같은 정도이니 무시할 하는 것은 한국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A사 사장은 이란과의 오랜 비즈니스 경험 및 현지 생활 관습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진솔한 상담 전개를 통해 현지 진출에 성공한 케이스.

모든 나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와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슬람 혁명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란 사람들은 외부로 본인의 부를 나타내려 하지 않고 있고 또한 넥타이를 매지 않고 수수한 복장을 하고 있어 어떨 때는 상당히 가난한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부유층이 많으므로 우리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2) 실패담

이란 관공서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을 휴무하고 일반 회사는 목요일은 오전근무, 금요일은 휴무. 한국 A중소기업의 B사장은 두바이 출장시 두바이 수출물품의 약 40%가 이란으로 재수출된다는 현지 파트너의 얘기만 듣고 인접국인 이란 시장조사를 위해 방문. 그러나 B사장은 현지 공휴일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4일간(목-일요일) 출장. 현지에 와서 보니 목, 금요일은 현지 주말이고 토요일은 국경일인데다 마침 성직자 순교일이라는 슬픈 공휴일(이날은 모든 상점이나 식당이 문을 닫고 이란사람들은 집안에서 경건하게 보냄)이라 결국 3일간 호텔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음. 결국 4일째인 일요일 무역관을 찾아와 상담주선을 요청하여 어렵게 4개사와의 상담주선을 함.

그러나, 이란 사람들은 인살라(모든 것은 신에 달려있다)관습에 따라 약속개념이 별로 없는 편으로 보통 상담약속을 하였어도 통상 하루 전에 확인하고 당일날 재확인하여 꼭 오겠다고 응답하여도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당일날 상담주선이 이루어졌으니 그 결과는 오죽하였겠는가? 현지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A사 사장은 현지인들의 약속개념이 없음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상담에 임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것은 자명한 사실.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할 때도 교통편이나 현지숙박시설, 현지 명소에 대한 기초 정보를 얻으면서 비즈니스 출장에 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관련정보 없이 해외출장에 임하는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됨.

□ 관세 및 유통구조

(1) 수입관리제도

이란정부는 지난 90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석유의존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자국 제조업 보호 및 육성정책 차원에서 관세 및 비관세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

수입정책의 경우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5%이내의 저관세 및 수입완화 정책을 견지하는 반면 완제품 및 자국내 생산가능한 품목 및 사치성 소비재는 100%까지 고관세를 적용하여 최대한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 산업화 정책에 부합하는 석유화학, 농업, 광업, 자동차, 철강산업 관련 기계류의 경우 수입허가 면제
- 국내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원재료 및 시설재중 일부품목은 광공업성 사전수입 허가 면제품목으로 고시, 수입완화

비관세 정책은 주로 상무성 및 광공업성 등 수입허가 관청에서 사전 수입허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란의 산업화에 필수 불가결한 자본재는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수입을 촉진하고 있는 반면 이란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국산제품의 품질수준과 생산물량에 관계없이 수입허가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이란정부의 수입제한 정책에 대응, 산업협력을 통한 CKD방식 수출 등 현지 투자를 통한 수출확대 기반조성이 필요함.

모든 수입품목은 승인품목(Authorized), 조건부승인품목(Conditional), 금지품목(Prohibited)으로 분류되는데

- 자동승인품목 : 없음
- 조건부 승인품목 : 대부분의 품목이 해당되나 자동차, 화장품 등 불요불급한 완제품, 소비재의 경우 100%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금지품목 : 무기류, 마약, 술 등

그동안 이란은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품질 및 물량에 관계없이 국내 제조업체가 상업성에 신청시 고관세 또는 수입 미승인 품목으로 분류 하였으나 2001년 7월부터는 대부분 품목의 수입을 승인하는 대신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수입절차

- 상무성 수입신청
- 관계 부처의 사전 수입허가
- 시중은행에서 L/C오픈 사전 예치금 납부
- L/C개설, 수입실시
- 수입시 적용환율은 변동환율 (미1\$=약8,550 2004.6월 기준)

○ 정부부처 및 기관별 수입할당액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외환 예산사정에 의거 분배됨.

(2) 관세제도

이란의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세는 H.S 분류방식을 채택. 이란은 쌍무간 또는 회권국간 적용되는 특혜관세를 적용을 고려중에 있으나, 현재 관세율은 터키 등 9개 ECO 회원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이란 관세법은 수입품이 덤핑이나 유례없는 호조건 및 양보에 의하여 이란에 반입됨으로써 이란의 동종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과거 수입된 가격과 Proforma Invoice 상에 명시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추정가격에 의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반덤핑 관세부과의 투명성이 낮음. 현재까지 이란당국이 한국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음.

이란 관세규정에 따르면 이란의 수출품목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 이란정부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ECO회원국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율을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동일한 1개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관세분류는 H.S 분류방식을 채택. 이란은 관세율 조정을 통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데, 원자재, 부품 등 자본재는 약 10%이하의 저관세를 적용하며, 기계, 가구, 자동차등은 약 60%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바이어의 탈세조장 또는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덤핑 또는 비정상적으로 수입품 가격을 조정, 인하할 경우 이란정부는 동 특정품목에 대해 관세인상 등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음. 관세환급은 재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시 관세 우선 납부후 환급이 가능함. 수출촉진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류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며 관세면제 대상 품목은 상무성과 관련부서와의 협의하에 결정됨.

○ 관세의 종류

이란의 관세는 CNF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본관세(Custom Duty) 및 상업 이윤세(Commercial Benifit Tax : CBT), 은행세(Banking Charge)로 이루어 짐.

- 은행세(Banking Charge) : 5%

○ 관세 환급 : 재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시 관세 사후 환급

○ 반덤핑/상계 관세

이란의 관세법에 의하면 수입품이 덤핑이나 유래가 없는 호조건 및 양보에 의해 이란시장에 반입되어 이란의 동종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경제를 왜곡시키는 경우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 부과방법은 과거 수입된 동일품목의 수입가격과 현재 수입품의 P/I상에 명시된 가격과 비교,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낮은 경우 추정가격에 의해 관세를 산정, 부과함.

동사실이 발각될 경우 상계 또는 반덤핑 관세 부과와 더불어 의도적으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등(정상 가격에 의한 P/I발행을 요청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함.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는 극소수로 이는 국영 매 및 유통센터에서 L/C개설전 및 주문등록전 가격을 엄밀하게 체크하고 있기 때문임.

(3) 통관절차

수입품은 검수관의 감정 및 평가절차에 의해 철저히 검사되며 세관 신고서에 의거, 신고 되지 않은 품목은 밀수로 간주됨.

수입품 검사는 P/I, 원산지 증명서 및 인스펙션 증명서, 상업송장 및 관련 여타서류 체크 등을 통해 이루어짐. 유의사항은 세관에서 Green Paper를 발행한 후에도 Green Paper 뒷면에 통관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특별 스탬프나 도장이 찍혀져야만 완전 무결 통관으로 간주됨. P/I상의 금액과 상업송장상의 금액에 차이가 나거나 또는 중량 증명서상의 중량과 실제 중량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할 때까지 통관이 완료된 경우라도 Green Paper 뒷면에 최종확인 스탬프가 찍히지 않음. 샘플통관의 경우 소액, 소량인 경우라도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관 소요기간도 1-2주 정도 소요됨.

수입 통관시 실중량 측정과 관련, 철강, 종이, 파이프 등의 경우 수입 통관시 제품무게를 측정하여 Invoice에 명기된 중량과 비교하는데 이란세관은 국제적 관례로 인정하고 있는 중량의 오차범위(약 5%내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고중량 측정저울의 일반적인 오차한계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란은행은 세관에서 측정한 중량이 invoice에 명기된 중량에 미달 할 경우 통관 지연 또는 거부를 하고 있음.

○ 이란의 공식 통관절차

- 수입물품의 보세창고 보관
- 세관에 관세 사정 요청
- 물량확인(매우 엄격하게 수량 및 무게 확인)
- 샘플 테스트
- 가격 체크
- 관세 및 기타 제세 지불
- 통관확인서 발급

일단 상품이 수입되면 현지 도매상 또는 Agent(Distributor)를 거쳐 소매상, 최종 소비자로 분배됨. 이란의 유통구조는 서구 선진국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는 없는 실정임. 일반 소비재의 경우는 테헤란 바자 상인을 통해, 전자제품의 경우는 조무리 전자상가를 통해 이란 전역으로 유통되고 있음.

(4) 유통구조

1) 유통구조 개황

이란정부는 혁명 후 농작물과 공산품등 생필품을 전국 각 지역의 협동조합을 통하여 유통 시켜 왔음. 수입품은 상무부 산하10개 국영 구매 유통 센터(PDC)가 전국의 협동 조합망을 통해 유통시켜 왔는데 91년 10월부터 9개의 PDC가 해체되고 1개의 PDC만이 존재하고 있어 정부부문의 영향력이 감소된 반면 혁명이후 세력이 위축되었던 바자르 상인들(한국의 동대문시장과 비슷)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2) 대금결제 방법

일반적으로 바자르 상인을 통한 유통구조의 특징은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신의 및 신뢰관계에 의해 대금결제 방법이 결정되고 있음. 대 바자르 상인을 정점으로 한 유통구조는 복수의 피라밋형으로 형성되어 있어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며 반대일 경우에 대개 3개월 어음으로 결제하였으나 최근 현지화의 가치 급락으로 현금결제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음. 물자 품귀현상 등이 일어날 때는 결제 기간이 단축되며 공급 과잉현상 발생시에는 결제 기한도 연장됨.

3) 이윤범위 및 할인폭

정부기관에 의한 유통시에는 이윤폭이 10% 내외이나 바자르를 통한 유통시에는 유통단계별로 30~40%의 마진폭이 일반적임. 일반상품의 경우 도매상이 직접 소매상으로 유통시키나 전자제품의 경우는 중간 Distributor 1단계를 더 거침. 이란은 전형적인 Seller's 마켓으로 구매량의 과다에 관계없이 할인폭은 미미함.

4) 유통업 최근 동향

공산품 소비재의 경우 이란 정보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이 밀수로 수입되고 있는데, 이란의 각종 상가에는 많은 물량이 유통되고 있으며 TV, 신문, 거리 간판에 버젓이 광고도 되고 있음.

5) 백화점, 소매

이란에는 백화점 및 전문점과 같은 현대화된 유통채널이 전무하였으나 '95.2월 이후 정부 주도로 테헤란시에 종합물류센터가 상당수 개점되어 있음. 그러나 이란은 아직까지 바자와 같은 전통 도매상 및 소규모의 소매상을 통해 대부분의 상품이 유통되고 있음.

□ 투자유치정책 및 진출절차

(1) 투자유치정책

1) 투자정책

이란의 헌법 81조는 ‘무역, 산업, 농업, 광업, 서비스업 분야는 외국인에게 양도를 금한다’라고 명시하여 원천적으로 외국인의 주요산업 소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수호위원회는 ‘주재국과 법적계약을 체결한 이란주재 외국 투자회사는 헌법 8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외국기업의 진출을 허용한 후 특정 자원개발을 제외한 일반 산업 투자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100%지분 취득을 인정.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Queshm, Kish Island 및 Charbahar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고 “자유무역지대 외국인 투자관련법”을 제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그리고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원자재, 부품, 반제품은 무관세로 통관이 됨. 다만 가공후 60%는 재수출 또는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판매해야 하며, 나머지 40%는 이란 내륙으로의 반입이 가능함. 이때 이란 내륙 반입시 적용되는 관세는 고율의 완제품 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자유무역지대로 당초 수입한 원자재에 해당하는 관세가 적용되어 저율의 관세를 납부하고 반입이 가능함.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 국내의 경우 외국인 투자는 100%까지 허용하나 사안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제로 100% 외국인 투자 사례는 전무함. 이란의 외국인 투자는 현지의 까다로운 행정 규제 및 인프라 미구축 등으로 외국인의 현지투자실적은 미미한 상황임. 현재 이란정부는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와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경우 1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 석유화학 특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 본토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는 도입예정

○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및 참고사항

- 주요 법규

- The Law for the attraction and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Iran.
- The Law pertaining to the establishment of free trade-industrial zones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 Regulations governing capital investment in the free trade-industrial zone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 관련 법규 주요 내역

- 외국인의 투자 주체 (외국 정부기관의 투자 불가)

- 외국 자연인
- 외국 법인

- 외국인의 투자가능 분야

- 공업, 광업, 농업, 운송 등 서비스업

- 외국 투자 자본의 대상

- 외국 화폐
- 기계류, 부품, 원자재, 운송장비, 특허권 등 자본재와 지적 소유권
- 최초 투자자본의 대 이란 반입은 총 투자액의 최소 10%를 6개월 이내에 완료(투자 보증 성격)

○ 주요 노동 법규

- 고용 계약

- 현지법규의 경우 외국인 1명당 현지인 3명이상 고용 원칙
- 수습기간 : 비숙련공 및 반숙련공 최대 1개월, 숙련공 및 전문직 최대 3개월
- 계약종료 : 피고용인 사망, 퇴직, 사직,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 계약에 의한 작업 완료

- 퇴직금

- 피고용인 사망시 1년간 3개월분 급여×근무년수
- 일반적인 경우 근무년수×1개월(최저) 또는 2개월(최대)

- 사회보장제도
 - 피고용인의 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세 납부
 - 세율 30%(근로자 7%부담, 고용주 23%부담)
- 노조관계
 -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합의에 대해 단체협약 및 계약체결 가능
 - 당사자간 합의에 실패하여 파업 및 조업지연 사태가 발생할 시 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고, 이의 불응시 중재 법정에서 최종 판결

○ 부동산 취득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

2) 투자진출 기본 여건

○ 원부자재 조달여건

현지 정부가 수입대체 산업육성을 국시로 삼아 추진하고 있어 제 3국 및 자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조달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나 최근에는 강력한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원, 부자재 조달이 여의치 않은 실정임.

○ 생산여건

현지 노동 인건비가 저렴하고 사회간접자본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현지 관공서의 업무처리가 비교적 느린 편에 속하는 것이 단점임.

○ 판매여건

현지 6천 7백만의 소비 인구 및 인근 CIS국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여 판매 잠재력이 큰 편.

3) 투자경영 관련 법규

○ 원산지 관련 규정

물품 수입시 제조 및 공급업체의 해당국가를 나타내는 원산지 증명서를 신용장 개설 은행 및 세관에 반드시 제출 의무화.

- 지적소유권 : 관련 법규 미비 상태
- 상표권 : 보호시점은 신청등록 시점부터 발생하며 보호기간은 10년, 갱신기한은 보호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의장권 : 관련 법규 미비 상태
- 특허권 : 출원자의 요청에 따라 5년, 10년, 15년 및 최대 20년까지 보호하며 보호시점은 신청등록 시점부터 발생
- 공해방지법
이란 Green Environment Protecting Organization은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 공장설립시 해당 지역의 동 조직위로부터 허가를 득하도록 의무화하는 신환경보호법을 채택하고 있음.
- 반덤핑법
이란 세관은 각 상품에 대한 표준가격을 자체적으로 선정, 수입품이 표준가격 이하로 신고된 경우 표준가격을 근거로 관세를 계상 징수함.

(2) 외국인투자제한

1) 투자제한

전 산업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대체 산업, 석유화학, 석유·가스 개발,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석유·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왔으나 96년 이후 Buy-Back 방식의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있고, 약 40개의 프로젝트를 국제입찰로 추진하고 있음.

2002.5월 개정된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는 전 산업부문 25%, 개별분야당 3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수출목적외국인 투자는 100%로 상향조정함. 아울러 외국인의 투자 허용 분야도 현지인이 투자가능한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함. 하지만, 수출목적외의 서비스 법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 등은 현재까지도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동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동시행령이 공포되어야 구체적인 투자가능분야와 분야당 투자한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단, 자유무역지대의 외국인 투자는 100%까지 허용되며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조세면제 등 특별 인센티브가 부여됨.

2) 전반적인 투자여건

이란은 현재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서비스업진출 등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광공업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투자(100%까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안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과실송금문제, 현지의 까다로운 노동관행, 분쟁해결절차의 불투명, 과도한 세금부과, 느장행정 등으로 외국인의 투자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실제로 외국인의 투자사례는 극히 미미한 상황임. 2002.5월 외국인 투자법 개정이후 점차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까지 내국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인센티브 제공 미비 및 과실송금 보장이 미흡한 상황임.

- 이란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1992~2002) : 미\$ 45억
- 이란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2002.7~2003.6) : 미\$ 40억

(3) 투자진출절차

1) 투자형태의 결정

자유무역지대와 본토 모두 외국인에 의한 100%지분 보유 허용.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합작 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 모기업의 지사를 설치할 것인지 등의 투자형태를 먼저 결정하여야 함.

2)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 현지법인 진출

가. 투자허가 단계

- ① 현지파트너 물색 및 계약체결
- ② 광공업성(Ministry of Industries & Mines) 및 품목별 관련 부처에 투자 의향서 제출
- ③ Organization for Investment,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of Iran에 합장투자승인 신청(총 심의기간 2주)
 - 구비서류
 - 합작투자 승인신청서
 - 계약서(현지 파트너와의 계약서)
 - 사업개요(Project Summary)
 - 기타(신청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자료도 무방)
- ④ 외국인 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Board; 경제관련 차관으로 구성) 심의

나. 현지법인 설립절차

- ① 정관작성 : 회사연혁, 목적, 기한, 자본금, 이사 및 감사의 수, 주주총회, 분쟁해결 절차 등
- ② 발기인 총회개최
- ③ 설립 등기 : 총회사실의 신문 공고후 등기소 등기
- ④ 등록장소 및 기간 : 등기소에 4개월 이내 등록(동 기간내 미등록시 법원으로부터 6개월 연장 허가가 가능)

○ 지사설립(연락사무소서 설치와 동일)

가. 현지파트너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산업성(Ministry of Industry) 국제부에 지사설립 승인신청

· 구비서류(현지업체를 통해서만 신청가능)

- 지사설립 승인 신청서
- 이란파트너와의 계약서(공증요)
- 활동계획서(공증요)

다. 신문 공고후 등기소 등록

주) 소요비용은 없으며, 소요기간은 통상 2~3개월 소요됨

(4)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1979년 이란의 회교혁명이후 97.8월 처음으로 외국기업의 등록을 허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란에 주재원 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하는데 법률적인 제한이 없어짐. 하지만 실제 허가를 득하기는 용이하지 않은 편임.

동법안은 합법적으로 이란내에 외국기업의 법인 등록 및 지사설치가 가능하고 이는 상호 호혜적인 이방 즉, 이란기업의 합법적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란법규 및 정부에 의해 허가되는 지역에 한하여 활동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란의 상법 및 외국인 투자유치법을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음.

1) 사전준비 단계

단기체류비자로 입국하여 사무실, 주거할 곳과 고용원(외국인 1인당 현지인 3명 고용을 의무화)을 확보함.

2) 지점의 설립 등기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서류가 많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필요서류

- 위임장
- 활동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 등본
- 회사정관
- 임명장(창설요원)
- 재직증명서
- 연간 활동 성과표
- 지점 자금조달계획서
- 현지 고용원 조달계획서 등

동 서류를 영문작성하여 한국 외무부 영사과의 인증을 득하여 주한이란대사관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현지 등록시에는 현지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득하여 유첨하여야함.

3) 취업비자 및 체류비자 취득

상기 지점설립이 되면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지점 등록하는데 3~5개월 가량의 시일이 소요되어 단기비자의 연장 등이 필요함.

(5) 산업단지/개발

3개의 자유무역지대와 별도로 주로 내륙지역에 Sarakhs, Sirjan, Anzali 등 16개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지정,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외국기업 유치에 노력중임. 합작투자는 외국 자본의 비율을 49%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료회의의 승인을 득하면 100% 단독 투자도 가능함. 이란의 주요 산업단지는 하기와 같음.

Sirjan Special Economic Zone

Sarakhs Special Economic Zone

Anzali Special Economic Zone

Anzali Port Special Economic Zone

Khuzestan Special Economic Zone

Salafchegan Special Economic Zone

Khorramshahr Special Economic Zone

Jolfa Special Economic Zone

Arge Jadid Special Economic Zone

Bandar e Imam Special Economic Zone

Bushehr Special Economic Zone

Bandar Amir Abad Special Economic Zone

1) Anzali Port Special Economic Zone

- 소재지 : 길란주
- 사업시행주체 : Port & Shipping Organization of
Gillan Province
- 주소 : Anzali Port
- 전화 : 98-181-34005/7
- 팩스 : 98-181-34802

2) Anzali Special Economic Zone

- 소재지 : 길란주
- 부지면적 : 140헥타르

- 사업시행주체 : Gilan Investment Development Co
- 주소 : Takhvar Bldg., Hafez Ave., Rasht
- 전화 : 98-131-734093
- 팩스 : 98-131-31673

3) Sarakhs Special Economic Zone

- 소재지 : 코라산주
- 부지면적 : 5,200헥타르
- 사업시행주체 : Astan-e Qhods Razavi
- 주소 : No. 3, Chamran St., Chamran Ave., Mashhad
- 전화 : 98-51-715065/6
- 팩스 : 98-51-715067

4) Sirjan Special Economic Zone

- 소재지 : 케르만주
- 사업시행주체 : Kerman Development Organization
- 주소 : No. 413, Sattarkhan St., P.O.X 14547, Tehran
- 전화 : 98-21-820 7043/5
- 팩스 : 98-21-820 4703

※ 특징 : 이란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우자동차가
현지 합작투자하여 자동차 생산중

5) Khuzestan Special Economic Zone

- 소재지 : 쿠제스탄주
- 부지면적 : 2,500헥타르
- 사업시행주체 : Khuzestan Overall Construction
Development Co
- 주소 : No. 28, 17th St., Kianpars Ave., Ahwaz
- 전화 : 98-611-368648
- 팩스 : 98-611-368649

(6) 조세제도

1) 세제현황

이슬람 헌법 51조는 모든 조세는 법률에 의하도록 조세 법률주의를 명문화 하고 있음. 조세 행정조직은 재무성에 세제국을 두고 그 산하에 국세청을 설치하여 조세정책 및 징수행정을 관장함. 하지만 비효율적인 조세시스템으로 인해 현지 비즈니스맨들의 조세포탈이 관행화됨에 따라 금년중 통합조세시스템 마련을 위해 이를 국제입찰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음.

2) 법인소득세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과세대상으로 외국 투자가가 출자하여 이란내에 설립한 법인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지점도 과세하고 있음. 과세대상은 회계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세토록 되어 있으며, 세율은 7~60%까지 누진 과세됨.

3) 법인영업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모든 법인에 적용되며 회계연도 중 과세대상 법인소득의 10%를 부과함.

4) 개인소득세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소득에 대해 12~54%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함. 외국인 회사의 본국 파견직원에 대해 인두세 성격의 개인소득세 (약 23%)를 부과하고 있음.

5) 기타

○ 계약세

건설 및 용역회사의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5.5%를 원천 징수함

○ 광업세

석유 및 기타 광물분야 종사기업의 순이익에 대해 55%를 부과함

참고자료

1. 세계 비즈니스 정보 - 이란편, KOTRA 해외조사팀, 2004
(<http://www.kotra.or.kr>)